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단25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천 4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21. 11. 13.부터 2022.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2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직원이 아닌 피고 C에게 사용인감을 주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명의의 명함을 인쇄하여 원고에게 주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임을 믿게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거나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2) 예비적 주장

공사계약상 도급인 란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사계약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2019. 3.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도급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 2) 피고 C이 2019. 4.경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창호 계약금, 시멘트 대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에 3천 4백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3천 4백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 4) 피고 C은 2019. 6. 8.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는 2019. 6. 17.까지, 전체공사는 2019. 7. 10.까지 각 완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 4백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그동안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는 2019. 6. 21.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6)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거나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나. 판단

-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F의 계좌에 합계 3천 4백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C이 2019. 6. 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또는 약정금)으로 3천 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다음으로 원고가 직불하였다는 취지의 25,62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공사내역별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지출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공사대금이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미지급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 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별지

확 인 서

- 1- 골조공사 6월11-6월17일까지 완료
- 2- 전체공사 7월10일 완료

상기 일정을 또다시 어겨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 될 경우
선 결재된 3천4백만원을 즉시 반환하고 이후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질것을약속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사 진행 중 발생된 인건비 자재비 등 미지
급분 역시
본인이 책임지고 정리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년 6 월 8 일



